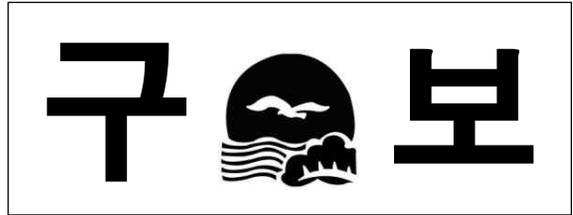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336 호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차 례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3-1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제2023-155호)) 3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14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153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고 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1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허가번호	허가일	위치	면적	목적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허가 기간
제2023-4호	2023.7.10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317	122㎡	인천중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등	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317	2023.7.10. ~ 2026.7.9.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14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3. 공고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쥬에스엘에스인***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25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폐문부재
2	최*훈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95, 743동 2202호		폐문부재
3	김*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번길 54		폐문부재
6	박*선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222번길 36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3. 07. 14. ~ 2023. 07. 28. (15일간) ※초일 산입

5. 공고사항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032-760-7699, FAX.032-760-6997)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32-760-76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3. .
제 출 자: 도시항만개발과장

1. 제안이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4조)
- 나.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안 제5조·제6조)
- 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안 제7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 다. 입법예고 : 2023.07.14. ~ 2023.08.07.
-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 부패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 4. 주민협의체 및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 6. 민간 참여 확대 방안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 3.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제7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 2.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8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와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입찰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의 계약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 2.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3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